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폴란드 STH 신공항 개발운영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1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8

5. 과업수행 방법 11

6. 과업성과품 제출 11

7. 보안대책 13

Ⅱ. 예정공정표 15

Ⅰ.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폴란드 STH 신공항 개발운영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과업배경 및 목적**

○ 폴란드의 기존 공항(바르샤바 쇼팽 공항)은 수년 내 여객처리가 가능용량(연간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현지 정부는 신공항을 건설하여 중동부(CEE) 유럽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및 폴란드 정부 간 MOU체결('21.12) 후 사업 가치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환경조사, 수요 및 경제성 분석, 기술/재무/법률적 예비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폴란드 STH 신공항 개발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본 사업의 전략적 운영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이 투자 참여를 진행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3. 과업내용

□ 사업환경조사(기초자료)

○ 기초자료 분석

- 폴란드 일반현황, 사회경제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 폴란드 국가 거시지표, 신용도, 발전 전망 등
- 폴란드 바르샤바 기존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 여객/화물 항공수요 현황
- 연결교통 현황

○ 제도 및 정책성 분석

- 폴란드 정부 중장기 전국 공항 개발관련 주요계획 및 정책방향(STH 신공항 특별법 등)
- STH 신공항과 연계한 STH 철도허브계획 추진현황
- 기존공항 폐쇄 및 STH 신공항 이전에 대한 근거
- 폴란드 투자제도 및 유사 투자사례, 공항개발 사례

○ 주요 사업주체 분석

- 현지(발주처) 및 국내 사업주, 예상 투자자 조사

○ 관련 선행 보고서 등 기존 자료 검토

□ 수요 및 경제(항공수요 및 경제성)

○ 연간 여객수요 전망 및 항공기 운항횟수 검토(항공수요)

- 항공수요예측 방법론 제시
- 발주처 항공수요예측 결과 검토 및 보완
- 발주처 화물수요예측 결과 검토 및 보완

○ 접근교통량 검토(항공수요)

- 항공수요 추정결과 토대 접근 교통량 검토 및 보완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경제성)

- 분석 방법론 설정 (ICAO, FAA등 항공관련 국제기구 발간 지침 또는 KDI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등에 따른 적합한 방법론 제안 및 작성 지원)
- 비용항목 선정 및 비용 산출, 편익항목 선정 및 편익 산출
-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NPV, IRR등 산정

○ 국내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경제성)

- 국내기업 수출효과, 국내인력의 고용효과 및 기관 경쟁력 제고 측면 분석
- 폴란드 내 진출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산업 연계 시너지효과 분석
- 기타 파급효과 분석

□ **기술(입지여건, 시설/건설/운영계획, 사업비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 입지 및 기존공항 현황자료 검토(입지여건)

○ 공항부지 분석자료 검토(입지여건)

- 지질/지층,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 검토
- 현행 및 예상되는 ICAO 기준변경 적용 장애물 제한표면 내 자연/인공 장애물의 높이 및 위험영향 분석결과 검토
- 토지이용계획 및 항공기 운항 영향 검토

○ 용량분석 및 시설규모 산정결과 검토(시설계획)

- 시설별 설계기준 검토
- 활주로, 계류장 등 용량 분석 및 시설규모 산정 및 검토
- 공역 제약사항 등에 따른 활주로 용량 대비 ATC 용량 검토
- 터미널 서비스 수준, 단계별 한계용량 및 시설규모 산정 및 검토
-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수익시설) 용량 및 시설규모 산정 및 검토
- 접근 교통체계 검토
- 시설 및 장비별 교체, 개량, 용량 부족 시점 제시

○ 단계별 개발계획 분석(시설계획)

- 공항 종합 평면/배치계획 검토
- 시설확장 및 개선계획 검토
- 건축계획 개념 및 방향, 확장성, 건물배치계획(배치도), 외부공간계획, 교통동선계획 검토
- 환경친화적 설비계획 검토

○ 랜드사이드 시설계획 검토(시설계획)

- 공항 접근체계(터미널 건물과 차량 출입을 위한 적재 및 하역, 주차시설 등) 검토
- 터미널 및 수속절차 검토
- 항공기 운항체계(출발/대기 승객을 위한 공간, 출/도착 승객을 위한 동선체계 등) 검토
- 기계/전기/통신 및 통합보안시스템 검토
- 폴란드 공항 내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 현황 및 국내 공용여객처리시스템(AIRCUS) 진출 방안 검토

○ 에어사이드 시설계획 검토(시설계획)

- 에어사이드 수용능력 검토 및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양방향 이착륙 가능조건, 시설개선 필요성 등)
- 구조소방대의 위치 및 조류 충돌방지(퇴치) 방안 검토
- ICAO/EU 비행장설계 및 운영관련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배수 및 급수시스템 효율성 검토

○ 건설공정 적정성 검토(건설계획)

- 단계별 건설비용 및 투자시기
- 공사계획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계획 검토
- 설계/구매/시공 일정, 착공 후 공정기간 및 공정률 등 상세 검토
- 폴란드 인허가 근거법률 및 소요기간 등 검토

○ 공항운영계획 적정성 검토(운영계획)

- 공항 운영계획 및 공항시설물의 유지/보수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 운영방향 설정 및 수익증대방안 검토
- 운영조직 및 운영인원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공항 개발 단계별 CAPEX/OPEX 적정성 검토(사업비)
- 국내 및 폴란드 현지 단가 비교 분석
- CAPEX/OPEX 예측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 및 검토(ESIA)
- 폴란드 환경영향평가 시행결과 분석, 검토 및 보완(항공기 소음, 대기, 수질, 폐기물, 오수 등)
- ICAO/EU/폴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영향과 기술 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현지 법률 검토

□ 재무(재무성, 재무안전성 및 사업위험도)

○ 투자의사결정 지원 위한 재무모델 작성(재무성)
- 주요가정사항, 자본구조, 조달금리, 주요세제 반영
- 가정사항의 적정성 검토

○ 사업구도 및 재원조달(재무성)
- 부채비율, 자기자본 투입계획/타인자본 조달계획/예비재원 조달계획의 검토
- 대주단 타인자본 조달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 발주처 협상 위한 최적 사업구조 제안
- 최적 투자기간(풋/콜옵션 조건 및 행사여부) 검토, 풋옵션 지분가치 산정 및 절차 제안
- 부채금융(Debt Financing) 인수 참여 및 위험 헷지 방안 검토

○ 재무 분석(재무성)

- SPC 수익성지표(NPV, ROE, ROI, 회수기간) 및 안정성지표(DSCR, 현금부족 발생여부) 검토
- SPC와 별도로 한국 투자자 측 수익성/안정성 지표 도출(추가 컨설팅수익, 주주대여금, 우선/보통주 등 반영)
- SPC 추정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환위험 분석 및 환위험 헤징방안 검토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 수익 및 비용의 검토(재무성)

- 항공수익, 비항공수익 예측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 운영비용 예측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과거 자료, 방법론, 항목 선정 및 산출값)
- 시설투자에 따른 사용료 인상 시기 및 금액 검토

○ 세무 검토(재무성)

- 주요세제 검토 (투자 실행, 건설 중, 운영 중)
- 이익회수 시 주요 세무이슈
- 한국 투자자 최적 투자구조 제안(조세제도 반영)

○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분석(재무 안전성)

- 기관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한 수익성, 차입금 상환능력, 재무 레버리지 등 분석

○ 신청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미치는 영향분석(재무 안전성)

○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재무 안전성)

- 기관의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
- 추정 부채상환계수(DSCR)로 타인자본 조달 가능방안
- 운영기간 중 추정 부채상환계수(DSCR) 적정수준 달성여부 전망 및 추가 재원조달금액의 정도

○ 국가위험도 및 사업위험도 분석(사업위험도)

- 사업 리스크 도출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법률(법률 및 제도분석, 계약검토)

○ 현지 관련법규 검토(법률 및 제도분석)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
- 사업 추진 방식의 적합성 검토
- 현지 SPC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제반 법률 검토
- 관련법규의 위반여부 및 사업영향 검토(기타 STH법, 항공법, 외국인투자법 등)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제도 검토
- 발주처 협상 위한 최적 사업구조/계약조건 제안

○ 전략적 운영파트너 계약 검토(계약검토)

- 주요 계약내용 검토(Term Sheet 초안 반영)
- 소수 지분투자로 이사회 내 경영권 참여 위한 Veto권한(또는 만장일치) 필요 분야 검토
- 지분투자 시, 이해관계자들 간의 리스크(Risk Allocation) 매트릭스 수립
- IGA(Inter-Government Agreement)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검토

□ 사업수행 계획 (예비 사업참여자 수행분)

○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 검토 및 분석자료(마스터플랜 등) 제공

*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과업수행자 추가 자료 요청 시, 대상사업 사업권자 및/또는 현지 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료 적시 제공 지원

○ 기 입수자료 바탕으로 사업 환경조사 및 검토 (과업수행자와 공동수행)

○ 지분투자 및 참여형태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 기업실사, 재무타당성 분석 및 법률 검토 지원

○ O&M 비용 및 수행조건(적정성) 검토 및 사업참여자 내부자료(벤치마킹

데이터 등) 제공, O&M 수행방안 및 수행체계(조직, 예산 등) 수립·검토(과업수행자와 공동수행)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을 외부 전문기관(현지업체 포함)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 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 대상사업의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Ⅱ.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2022								2023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 사업환경조사	60일										
2. 현지조사 및 유관기관협의	수시										
3. 기술적 타당성분석	120일										
4. 재무적 타당성분석	120일										
5. 법률적 타당성분석	90일										
6. 위험성 및 헷지방안 검토	90일										
7. 보고서 작성	30일										
보고회	-	착수 보고				전문가자문	중간 보고			전문가자문	최종 보고

□ 기타 요청 사항

○ 사업 착수 후 3개월 내 중간보고서 (80% 완성도) 제출 필요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